인권교육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Q&A

Q: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A: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실수를 포용하는 학교문화를 통해 성찰과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체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일상화 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학교 현실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이나 억압, 강요, 획일화 등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보다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학교생활에서 일상화 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갈 때 가능하며전라북도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의 전제조건인 인권우호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 .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는 학칙 기재사항이라는 형식을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 례는 학생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호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Q: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되었으므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A: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가 자의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학생의 인권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과 학생인권조례는 그 법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정을 제·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의 4(의견 수렴 등)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Q: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교생활 규정 변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복장, 두발의 길이 . 모양 . 색상 등 학생들의 주 관심사인 용모와 관련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 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휴대 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

에 그에 따른 학교 규칙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휴대전화기 소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거하여 일주일, 한 달씩 돌려주는 않는 규정들은 두고 있는 데 그 규정들은 헌법 상 기본권 제한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 . 모양 . 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Q: 요즘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A: 그동안 학생 인권이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기에 학생 인권에 관한 한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학생, 학부모에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 조례가

일선 학교의 요구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인권 조례를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교육 주체들 모두가 공통으로 염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 주체 모두에게 '가고 싶은 곳, 행복한 곳, 즐거운 배움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존중 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교육 주체 모두는 전북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이러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소통과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고 소통과 참여의경험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의견차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 침해 시 조사 및 구제 활동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인권 교육 강화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 교육 강화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인권 우호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현장에서 우려되는 혼란과 갈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Q: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교사는 학생들을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와 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는 학생이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고도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제 학생을 소통과 참여의 주체로 바라보고 학교 라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해야만 합니다. 교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서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책무 의식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바로 알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와 참여의 권리가 잘실현되기 위해서는 동아리, 학생회, 학교규정 개·개정,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학교 문화 선도의 주요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의 장은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기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Q: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전북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A: 전북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연착륙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팀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북학생인권조례 세부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 및 해설서를 제작하여 학교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생생활규정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 하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2014년 4월 30일까지 제·개정 할 것을 일선학교에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가도록 지도, 지원해 가겠습니다.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을 진행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강사단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사제동행 인권 독서토론 동아리를 구성하여지원하는 등 학교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하여 학생인권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자 학생 참여위원회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월에 개소 할 학생인권교육센터 설립과 그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에 인권옹호관, 조사·구제팀, 정책지원팀 등을 구성하여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순조 롭게 안착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의 순조로운 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재정·인적 지원에 관한 과제들을 도출하여 심의기구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육감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관련 과제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전북하생인권조례 OX 카그..

(어떤 과일이 나오셨나요?)

